

특허법원 민사항소심 소송절차안내

2018. 9. 1. 개정

특허법원

I. 목적

민사소송법 제24조가 정한 '특허권 등'에 관한 민사항소심 사건(법원조직법 제62조의2에 따른 '국제사건'을 포함한다)에서의 변론과 심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당사자에게 소송절차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이를 토대로 신속하고 경제적이며 전문화된 변론과 심리절차를 진행하여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사건접수 및 준비명령

1. 항소인에 대한 준비명령

가. 항소장의 항소이유 기재가 불충분한 경우 재판장은 즉시 항소인에게 구체적 항소이유가 기재된 준비서면의 제출을 명하는 [첨부 1]의 준비명령을 한다.

나. 항소인은 위 준비명령을 받은 후 4주 이내에 다음 사항들에 관한 기재를 포함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1) 1심판결 중 사실인정 또는 법리적용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
- 2) 1심에서 한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상대방 주장 중 다툼이 없는 부분
- 3) 1심에서 제출한 증거의 요지와 그 증명취지
- 4)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주장 및 증거와 그 증명취지, 위 주장·증거를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이유
- 5) 관련사건(동일한 특허권 등에 관한 심판·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 이하 같다)의 표시

6) 조정·화해 희망 여부

2. 피항소인에 대한 준비명령

가. 피항소인은 항소인의 항소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을 송달받은 후 3주 이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1) 항소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 항소인의 주장 중 다툼 없는 부분
- 2) 1심에서 제출한 증거의 요지와 그 증명취지
- 3)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주장 및 증거와 그 증명취지, 위 주장·증거를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이유
- 4) 상대방이 제출한 서증에 대한 인부
- 5) 관련사건의 표시
- 6) 조정·화해 희망 여부

나. 전항의 준비서면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피항소인에게 전항의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준비서면의 제출을 명하는 [첨부 2]의 준비명령을 할 수 있다.

3. 새로운 주장·증거의 제출 시 유의사항

1심에서 하지 아니한 주장을 제출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송완결을 지연시킨 것이 아님을 소명하여야 한다. 그러한 사유가 소명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해당 주장이나 증거신청을 민사소송법 제149조에 의하여 각하할 수 있다. 특히 1심 변론준비기일의 종결 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주장을 새로이 추가·변경하거나 그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로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하고, 그 제출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경우여야 한다.

4. 국제사건

가. 법원조직법 제62조의2에 근거하여 외국어 변론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첨부 3]의 외국어 변론 신청서를 제출한다(현재 국제사건에서 허용되는 외국어는 영어임).

나. 전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법원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신청서 부분과 함께 [첨부 4]의 의견서 양식을 송달한다. 상대방 당사자는 이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외국어 변론 신청에 대한 동의 여부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한다.

다. 외국어 변론의 신청 및 동의는 원칙적으로 제1회 변론기일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III. 사건분류 및 변론준비

1. 사건분류 등

가. 항소이유가 기재된 준비서면이 제출되면, 재판장은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할 사건, 절차 협의 등이 필요하거나 변론준비기일 지정이 필요한 사건, 조기 조정절차에 회부할 사건 등으로 분류한다.

나. 국제사건

- 1) 법원조직법 제62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건 중 당사자가 외국인인 사건, 주요 증거조사가 외국어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사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제적 관련성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가 있고 재판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법정에서 외국어로 변론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 2) 법원은 당사자가 모두 외국어 변론의 신청 및 동의를 철회하거나 외국어 변론으로 인하여 재판진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 외국어 변론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그 허가 취소는 이미 진행된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당사자는 외국어 변론 신청 철회 또는 동의 철회를 하는 경우 [첨부 5]의 철회서를 제출한다.

2. 변론기일을 지정할 사건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사건에 대하여, 재판장은 충실한 심리를 위하여 원고 및 피고에게 요약쟁점정리서면의 제출을 명하는 [첨부 6]의 변론준비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재판장은 당사자의 서면 공방 결과를 참작하여 주장 및 증거의 제출기간, 전문가 증인 등 시일을 요하는 증거의 신청 기간 등을 정하기 위하여 [첨부 7]의 변론준비명령을 할 수 있다.

3. 절차 협의가 필요한 사건 - 사건관리를 위한 화상회의

가. 재판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양쪽 당사자와 영상·음성의 송수신에 의하여 동시

에 통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하 '사건관리 화상회의'라 함)으로 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재판장은 수명법관을 지정하여 위 절차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나. 사건관리 화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인과 피항소인에게 화상회의의 일정을 통지하고, 그 준비를 위하여 [첨부 8]의 사건관리 화상회의 준비명령을 할 수 있다.

다. 사건관리 화상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협의할 수 있다.

- 1) 변론기일 일자 및 횟수, 각 기일별 진행사항
- 2) 주장 및 증거의 제출기간(종합준비서면의 제출기간, 전문가 진술서 제출기간, 준비서면의 제출횟수 및 분량 포함)
- 3) 검증·감정이나 전문가증인 등 시일을 요하는 증거의 신청 여부 및 기간
- 4) 전문심리위원 지정 여부
- 5) 당사자에 의한 기술설명회의 실시 여부
- 6) 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심리를 선행하여 진행할 것인지 여부
- 7) 침해 여부, 무효 여부, 손해배상액 산정 등 쟁점별로 진행할 것인지 여부
- 8) 쟁점 특허에 관한 정정심판 또는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 진행 방안
- 9) 무효, 권리범위확인 등 관련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 병행심리를 진행할 것인지 여부
- 10) 조정절차 회부 여부
- 11) 쟁점의 확인 및 정리

라. 사건관리 화상회의에서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첨부 9]의 절차에 관한 준비명령을 할 수 있다.

마. 전항의 준비명령에서 종합준비서면의 제출을 명한 경우, 항소인은 사건관리 화상회의 후 3주 이내(또는 준비명령에서 정한 기간)에, 피항소인은 항소인의 종합준비서면이 제출된 날로부터 3주 이내(또는 준비명령에서 정한 기간)에 각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바. 종합준비서면에는 모든 주장(1심에서 한 주장 중 철회하지 아니하는 주장 포함)을 기재하고, 그에 대한 주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 라.항의 준비명령에서 특정

쟁점에 대해서 종합준비서면의 제출을 명한 경우에는 특정 쟁점에 대한 모든 주장을 기재하여야 한다. 기 제출된 준비서면과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을 인용할 수 있다.

사. 준비명령에서 정한 주장·증거의 제출·신청 기간 이후 주장을 추가·변경[예를 들어, 신규성·진보성에 관한 주장의 근거가 되는 가장 가까운 선행발명(이하 '주선행발명'이라 함)을 변경하거나, 선행발명이나 그 결합관계를 추가·변경하는 경우 등]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송완결을 지연시킨 것이 아님을 소명하여야 한다. 그러한 사유가 소명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해당 주장·증거신청을 민사소송법 제149조에 의하여 각하할 수 있다.

4. 변론준비기일 지정이 필요한 사건

가. 주장 및 증거를 정리하거나 기술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당사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재판장은 수명법관을 지정하여 위 절차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나. 변론준비기일이 종결된 이후에 주장을 추가·변경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송완결을 지연시킨 것이 아님을 소명하여야 한다. 그러한 사유가 소명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해당 주장·증거신청을 민사소송법 제286조, 제149조에 의하여 각하할 수 있다.

IV. 변론기일

1. 변론기일의 운영

가. 항소인, 피항소인 순서로 각 **20분 이내의 범위에서** 구술로 변론한다. 수인의 소송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위 시간 내에 변론하여야 한다. 변론시간은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나. 구술변론을 위한 변론자료 등은 변론기일 **2 근무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품(특허실시제품, 피고실시제품 등)을 지참하고 재판장의 허가에 따라 위 제품에 관한 설명 또는 시연을 할 수 있

다.

라. 국제사건의 당사자는 법정에서 허가된 외국어로 변론할 수 있다. 재판장은 국제사건 소송의 지휘에 국어를 사용한다. 법원은 국제사건의 변론기일에 재판부의 말과 변론에 참여하는 사람의 말을 통역인에게 원칙적으로 동시통역의 방법으로 통역하게 한다.

2. 변론기일에서 쟁점별 집중 심리를 하는 경우

가. 법원은 여러 개의 청구가 병합되어 있거나 쟁점이 여러 개여서 청구별·쟁점별로 집중심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사자와 협의하여 변론기일을 쟁점별로 운영할 수 있다.

나. 특히 당사자 사이에 청구항 등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그에 따라 나머지 쟁점에 대한 주장이나 증거관계가 달라질 수 있어, 청구항 등의 해석에 관한 심리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건의 경우, 재판부는 당사자와 협의하여 청구항 등의 해석에 관한 변론을 다른 쟁점에 앞서 진행할 수 있다. 이 때 당사자는 다툼의 대상이 되는 청구항 등에 관하여 정정심판 및 정정청구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그 진행상황을 재판부에 알려야 하고, 향후 정정심판 및 정정청구 등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관한 계획 및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3. 심결취소소송과의 병행심리

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동일한 특허권 등에 관한 침해소송과 심결취소소송이 동일한 재판부에 계속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양 사건을 병행하여 심리한다.

나. 침해소송과 심결취소소송에서의 관련 주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변론준비절차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

다. ① 지적재산권의 등록번호가 동일한 관련사건은 동일한 재판부에 배당되는 것이 원칙이고, ② 당사자가 동일하고 출원된 지적재산권 또는 등록된 지적재산권의 내용이 동일·유사한 관련사건이 서로 다른 재판부에 배당된 경우 재배당절차를 통해 동일한 재판부에 배당될 수 있다(구체적 절차는 '특허법원의 사건배당에 관한 내규'에 따름). 당사자는 관련사건이 서로 다른 재판부에 배당되거나 계속 중인 경우 그러

한 사정을 재판부에 알려야 한다.

V. 증거의 신청 및 조사 등

1. 증거의 신청 및 채부

- 가.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1심에서 이를 제출하지 못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법원은 재판절차의 지연으로 일방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지 여부, 그밖에 신속한 절차진행이 필요한 사정의 존부를 고려하여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 나. 1심에서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와 증명취지가 동일·유사한 증거를 신청하는 경우 (예시: 1심에서 손해액을 감정한 경우 그 감정금액을 탄핵하기 위한 별도의 감정신청), 신청인은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 다. 1심에서 신청하였으나 채택되지 아니한 증거, 1심에서 철회한 증거를 재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 라. 증거조사절차의 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재판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사건관리 화상회의를 통해 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그에 관한 준비명령을 할 수 있다([첨부 10] 준비명령 양식은 손해액 산정을 위한 화상회의 준비명령의 예시임).

2. 전문가증인

- 가. 전문가증인을 신청할 때에는 증인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첨부 11]의 전문가증인 기본사항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나. 전문가증인의 신문을 위해 필요한 사항(전문가증인 진술서 및 증인신문사항의 제출기간, 증인신문시간의 제한, 전문가증인의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주장 및 증거의 제출기간 등)에 대해서는 [첨부 12]의 변론준비명령을 할 수 있다.
- 다. 주신문은 전문가증인 진술서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주신문에서 전문가증인에게 제시하거나 인용하는 모든 자료는 전문가증인 진술서 및 증인신문사항의 제출기

간 전에 증거로 제출되어야 한다.

라. 전문가증인이 외국인인 경우 당사자는 각 주신문과 반대신문을 위한 통역인을 대동할 수 있다(다만, 국제사건에서 전문가증인이 허가된 외국어로 증언하는 경우에 당사자는 통역인을 대동할 필요가 없다). 통역인을 대동하는 경우 원활한 통역을 위해 당사자는 사전에 통역인에게 기술적 내용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통역인을 대동하지 못하는 경우 증인신문기일 4주 전까지 재판부에 이를 알리고 통역인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마.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의 허용범위 내에서 전문가증인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원격영상신문의 방식으로 신문할 수 있다.

3. 자료제출명령

가. 일반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침해의 증명에 필요한 자료 또는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계산에 필요한 자료(회계장부, 매출 관련 장부, 경비 지출 관련 장부, 계약서, 세금계산서, 세금신고서, 은행거래내역 등.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나. 자료목록 제출신청 및 제출명령

당사자는 신청대상이 되는 자료의 취지나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개괄적으로 표시하여 자료의 표시와 취지를 적은 자료목록의 제출을 신청할 수 있다. 전자문서의 경우 자료목록 제출시의 문서가 제출 후에 변조되지 않을 것을 담보하기 위해 각 전자문서의 해쉬값을 함께 제출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예: 소정 특허 공정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특정 키워드를 포함하는 각 전자문서의 표시와 그 해쉬값).

다. 자료제출명령신청서

자료제출명령신청서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1) 제출을 구하는 자료의 표시
- 2) 위 자료와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과의 관련성
- 3) 상대방이 위 자료를 소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근거

라. 상대방의 의견서

자료제출명령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상대방에게 의견제출요청을 하고, 상대방은 의견제출요청서를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아래와 같은 사항이 포함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제출을 구하는 자료의 존재
- 2) 제출을 구하는 자료와 증명취지와 관련성에 대한 의견
- 3) 제출을 구하는 자료의 소지 여부(자료가 존재한 적이 있었으나 현재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 시점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힐 것)
- 4) 자료 제출을 거부할 사유가 있다면 그 구체적 내용
- 5) 제출을 구하는 자료 중 임의제출이 가능한 부분

마. 자료제출명령신청의 심리

- 1) 자료의 존재 또는 소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등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명령을 하기 앞서 당사자신문 또는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
- 2) 법원이 감정인 또는 전문심리위원을 선정한 경우 법원은 자료의 소지 여부 및 제출 대상 자료와 증명취지와 관련성을 판단함에 있어 감정인 또는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 3) 법원은 상대방 당사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할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제출 거부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심리하기 위해 비공개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법원은 제출거부 사유 심리를 위해 당사자에게 해당 서류를 제시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제시된 해당 서류를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만 심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요지를 상대방에게 고지할 수 있다.

바. 자료제출명령

법원은 자료가 제출되지 않음으로 인해 신청인이 받은 불이익과 자료의 공개로 인해 상대방 당사자가 받는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제출 자료의 종류와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제출 대상 자료가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거나 침해의 증명, 손해액의 산정과 무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부분을 삭제한 자료의 제출을 허가할 수 있다.

사. 열람범위지정 및 비밀유지명령

법원은 제출 대상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된 경우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영업비밀을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송대리인 및 법원이 선정한 전문가로 한정)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특허법 제224조의3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결정으로 위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아. 자료제출명령 불응시 불이익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법원은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감정

가. 손해배상에 관한 감정

- 1) 1심에서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 감정이 실시되지 아니한 경우, 통상의 실시료나 특허발명의 기여분 등을 정하기 위해 감정이 필요한 경우,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대한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 2) 일실회수액이나 침해자의 이익 등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양도수량, 단위수량당 이익액 등 관련 자료들의 효과적인 분석을 위해 회계전문가에 의한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 3) 감정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 4) 감정인은 영업·업무현황, 경영관리조직에 관한 현황, 회계시스템의 현황, 관계회사 등의 현황, 피고 실시제품에 대한 정보, 피고 실시제품에 대한 거래흐름(공급, 제조, 보관, 판매), 피고 실시제품에 관한 업무흐름(서류작성, 승인, 회계처리, 지급·회수) 등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질의할 수 있고, 당사자는 감정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나. 기술적 사항에 관한 감정

당사자 사이에 기술적 사항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5. 전문심리위원

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1인 또는 수인의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한다.

나. 전문심리위원의 사건 파악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변론준비기일을 열 수 있다. 전문심리위원은 기일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 등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다. 당사자는 전문심리위원의 질문에 대해 추가로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판장이 정한 기간까지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6. 손해액에 관한 주장 및 증거의 제출

가. 손해배상 청구인은 손해액산정의 근거조항을 명시하고 그 요건사실에 대한 주장에 관련된 증거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나. 상대방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여야 한다. 그러한 구체적인 답변이 없는 경우 재판부는 상대방에게 제품의 실제 판매기간, 판매수량, 판매단가, 판매액, 제조원가, 이익률 등을 밝힐 것을 명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부인하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회계장부 또는 매출이나 경비 지출 등을 기재한 회계·재무 관련 장부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문서가 원본 또는 원본과 동일한 사본으로 수정·삭제·누락되지 아니한 것임을 확인하는 작성주체(회사인 경우 대표이사 및 회계담당이사)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상대방이 회계장부의 진위에 대해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 장부 작성의 기초가 되는 서류(은행 또는 재무 서류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Ⅵ. 조정

1. 조기조정

가. 재판장은 항소사건이 접수된 직후 또는 적절한 시기에 사건의 조정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조기조정 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나. 조기조정 절차에 회부된 사건은 원칙적으로 조정전담판사가 담당한다. 조정담당판사는 당사자와 협의하여 법원 외의 적당한 장소에서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2. 변론기일 이후의 조정

재판장은 1회 변론기일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사건을 조정 절차에 회부하여 특허법원 조정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VII. 서류의 작성 및 서증의 제출

1. 준비서면

가. 일반적 작성방식

- 1) 글자 크기는 12PT, 줄 간격은 250%로 한다.
- 2) 준비서면의 분량은 민소소송규칙에 따라 30쪽을 넘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분량을 초과하거나 2개 이상으로 나누어 준비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절차협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법원은 분량을 초과한 준비서면의 제출 등을 허가할 수 있다.
- 3)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제출된 경우 해당 부분에 증거번호를 표시한다.
- 4) 기술용어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기재하고 그 출처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다.
- 5) 요약쟁점정리서면에는 [첨부 6]의 별지와 같이 항소이유의 요지, 다툼 없는 사항, 쟁점정리표, 증거설명, 추가 제출 증거, 서증에 대한 인부, 석명사항, 소송진행에 대한 의견 등을 간명하게 기재한다.
- 6) 종합준비서면은 서두에 모든 공격·방어방법과 주요 증거(선행발명 포함)의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 7) 종합준비서면을 제외한 나머지 준비서면에는 이미 주장한 내용을 반복하여 기재하지 않고 동일한 내용이 기재된 기 제출된 준비서면의 해당 부분을 인용하여야

한다.

- 8) 국제사건의 경우 외국어 변론을 허가받은 당사자는 허가받은 외국어로 작성된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국제사건의 양 당사자는 재판장의 명에 따라 종합 준비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진보성에 대한 주장방식

- 1) 특허·실용신안의 청구범위 등 명세서의 기재 내용이 보정 또는 정정청구, 정정심결 등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 그 변경 내역을 변경전과 변경후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판단 기준시점의 청구범위 등 명세서의 기재 내용을 명시한다.
- 2) 선행발명의 구성요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특허발명과 선행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를 대비한 대비표를 제출한다. 주지관용기술도 그 대비대상이 되는 부분을 특정한다.
- 3) 선행발명들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 주선행발명을 정하고 선행발명들 사이의 구체적인 결합관계와 그러한 결합이 쉬운 이유를 명시한다.

(예시) 선행발명 1 내지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X)

주선행발명인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의 OO 구성요소를 부가(또는 선행발명 1의 구성요소 2를 대신하여 선행발명 2의 OO 구성요소를 결합)하면 특허발명이 도출되고, ...의 점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결합에 대한 교시, 시사, 동기 등이 있어 통상의 기술자가 그러한 결합을 쉽게 생각해낼 수 있으므로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O)

- 4) 청구범위의 해석에 관한 심리가 선행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이유를 밝히고, 해석이 필요한 문언, 해당 문언에 관련된 명세서 기재 내용, 당사자가 주장하는 청구범위 문언의 해석 내용 및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다.
- 5) 통상의 기술자가 법률요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경우(예: 진보성, 균등범위, 자유실시기술 등)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학력, 자격, 종사분야 및 기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다. 명세서 기재불비에 관한 주장방식

명세서 기재불비에 관한 주장은 먼저 그 주장취지에 따른 적용조항을 명시한 다음,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기재한다.

라. 침해에 대한 주장

- 1) 피고실시제품·방법은 집행기관이 별도의 판단 없이 식별할 수 있도록 구체적·개별적·사실적으로 특정한다(예시: 상품명, 제품의 형식번호를 기재하고, 도면이나 사진을 첨부함).
- 2) 또한 피고실시제품·방법은 특허발명과 구성요소별로 대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피고가 실시하는 제품·방법과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하게 기재한다.
- 3) 특허발명과 피고실시제품·방법의 대응되는 구성요소를 대비한 대비표를 제출한다.

마. 손해액에 관한 주장방식

- 1) 손해배상 청구인은 손해액산정의 근거조항을 명시하고 위 조항의 각 요건별로 관련되는 증거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2) 상대방은 상대방 주장사실을 다투는 경우 단순 부인이 아닌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부인하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예: ① 원고가 특허법 제128조 제2항1)에 기해 손해액 산정을 주장하는 경우 피고가 원고 주장의 양도수량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양도한 수량을 밝혀야 한다. ② 원고가 동조 제4항에 기해 손해액 산정을 주장하는 경우 피고가 원고 주장의 이익액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실제 이익액과 그 산정의 근거가 되는 매출액, 경비, 이익률 등을 밝혀야 한다).

2. 증거설명서

가. 각 증거와 그 증명취지를 간략히 기재한다.

나. 선행발명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선행발명으로 제출하는 것인지 또는 주지 관용기술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한다. 하나의 문헌에 수개의 발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중 어떤 것을 선행발명으로 주장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힌다.

3. 서증

1) 前 “제1항”

- 가. 외국어로 된 서증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특히 외국어로 된 선행기술 문헌에 대해서는 발췌 번역문이 아닌 전문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하고 기계번역(자동번역)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증명취지와 관련된 부분은 밑줄 처리 등 적절한 방법으로 강조하여 표시한다.
- 나. 국제사건에서 허가된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에는 번역문을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현저히 필요하다고 보아 번역문 제출을 명한 경우는 전항과 같은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허가된 외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에 대하여는 국어 또는 허가된 외국어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 다. 서증명은 문서의 제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목을 표시하고, 제목이 없는 경우에는 문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예: "○○회사의 상품 카탈로그(2006. 1. 2. 발행)"]. 선행발명으로 제출하는 증거는 서증명에 그 취지를 명시한다[예시: "(선행발명 1) 등록특허공보 제0012345호"].
- 라. 한 개의 서증에는 한 개의 증거만이 포함되어야 한다[예시: 상표사건에서 수개의 블로그 게시글은 각각 별개의 서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되는 내용인 경우 가지번호로 표시한다(갑 제2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2 등)].
- 마. 특허·실용신안 등의 기술적인 내용이나 디자인의 구체적인 형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시 제품이나 모형, 사진, 동영상 자료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상표·디자인 사건의 경우 색상이 있는 서증은 사본의 제출도 색상이 있는 것으로 한다. 끝.

[첨부 1]

특 허 법 원

제 0 부

준비명령(항소이유)

사 건 2018나0000

원고(항소인) ○○○ 귀하

귀하의 항소에 따라 위 사건의 소송기록이 이 법원에 접수되었습니다. 항소인은 아래 준비사항에 따라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준비서면과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준 비 사 항

1. 항소인은 다음 사항들에 관한 기재를 포함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① 1심판결 중 사실인정 또는 법리적용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
 - ② 1심에서 한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상대방 주장 중 다툼이 없는 부분
 - ③ 1심에서 제출한 증거의 요지와 그 증명취지
 - ④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주장 및 증거와 그 증명취지, 위 주장·증거를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이유
 - ⑤ 관련사건의 표시
 - ⑥ 조정·화해 희망 여부
2. 1심에서 하지 아니한 주장을 제출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송완결을 지연시킨 것이 아님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사유가 소명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해당 주장이나 증거신청을 민사소송법 제149조에 의하여 각하할 수 있습니다. 특히 1심 변론준비기일의 종결 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주장을 새로이 추가·변경하거나 그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로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하고, 그 제출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경우여야 합니다.

3. 특허법원에서는 '특허법원 민사항소심 소송절차안내'를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http://patent.scourt.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충실한 재판 진행을 위해 위 소송절차안내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준비서면의 분량은 민사소송규칙에 따라 30쪽을 넘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준비서면은 위 소송절차안내의 'Ⅶ. 서류의 작성' 부분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증거신청은 'Ⅴ. 증거의 신청' 및 'Ⅶ. 서증의 제출' 부분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주장제출 및 증거신청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149조에 의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2018. O. O.

재판장 판사

[첨부 2]

특 허 법 원
제 0 부
준비명령(답변)

사 건 2018나0000

피고(피항소인) ○○○ 귀하

피항소인은 답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준비서면과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준 비 사 항

1. 피항소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답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① 항소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 항소인의 주장 중 다툼 없는 부분
- ② 1심에서 제출한 증거의 요지와 그 증명취지
- ③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주장 및 증거와 그 증명취지, 위 주장·증거를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이유
- ④ 상대방이 제출한 서증에 대한 인부
- ⑤ 관련사건의 표시
- ⑥ 조정·화해 희망 여부

2. 1심재판에서 하지 아니한 주장을 제출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송완결을 지연시킨 것이 아님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사유가 소명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주장이나 증거신청을 민사소송법 제149조에 의하여 각하할 수 있습니다. 특히 1심 변론준비기일의 종결 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주장을 새로이 추가·변경하거나 그에 관한 증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로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하고, 그 제출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경우여야 합니다.

3. 특허법원에서는 '특허법원 민사항소심 소송절차안내'를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http://patent.scourt.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충실한 재판 진행을 위해 위 소송절차안내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준비서면의 분량은 민사소송규칙에 따라 30쪽을 넘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준비서면은 위 소송절차안내의 'Ⅶ. 서류의 작성' 부분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증거신청은 'Ⅴ. 증거의 신청' 및 'Ⅶ. 서증의 제출' 부분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제출된 주장이나 증거신청은 민사소송법 제149조에 의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2018. O. O.

재판장 판사

[첨부 3]

외국어 변론 신청서

○ 사건번호 :

○ 제출자 :

○ 외국어 변론 허가신청 사유²⁾

☐ 당사자가 외국인인 사건

☐ 주요 증거조사가 외국어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사건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제적 관련성이 있는 사건

○ 허가신청 외국어³⁾ :

2018. ○. ○.

원고/피고 ○○○

2) 아래 사유 중 해당하는 항목에 표시하고, 각 항목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합니다.

3) 현재로서는 허가 외국어는 영어로 국한됩니다.

[첨부 4]

외국어 변론 신청에 대한 의견서

○ 사건번호 :

○ 제출자 :

○ 외국어 변론 신청에 대한 의견⁴⁾

☐ 동의

☐ 부동의

2018. ○. ○.
원고/피고 ○○○

4) 아래 중 해당하는 항목에 표시합니다.

[첨부 5]

외국어 변론 신청(동의) 철회서

○ 사건번호 :

○ 제출자 :

위 사건에 관한 외국어 변론 신청(동의)을 철회합니다.

2018. ○. ○.

원고/피고 ○○○

[첨부 6]

특 허 법 원
제 ○ 부
변론준비명령(요약쟁점정리서면 제출)

사 건 2018나0000
[원고 000 / 피고 000]

이 사건의 제1회 변론기일을 2018. O. O. 00:00 특허법원 000호 법정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원·피고는 **2018. O. O.**까지 별지 요약쟁점정리서면의 작성례에 따라 요약쟁점정리서면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O. O.

재판장 판사

<별지>

요약쟁점정리서면

○ 사건번호 :

○ 제출자 :

I. 항소이유의 요지

II. 다툼 없는 사항

III. 쟁점정리표

쟁점	쟁점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및 증거

IV. 제출 서증(전자문서) 중 주요변론 내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증거설명

번호	서증의 이름	작성일	작성자	요지 및 증명취지

V. 쟁점에 대한 당사자의 추가 제출 증거

증거방법	증명취지

VI. 상대방 제출 서증에 대한 인부 의견

VII. 상대방에 대한 석명사항

VIII. 소송 진행에 대한 의견

※ 요약쟁점정리서면의 작성요령

요약쟁점정리서면은 재판의 원활한 진행과 충실한 심리를 도모하는 데에 활용될 예정이오니, 원고 및 피고는 아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1~2페이지** 범위 내에서 작성·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법원에서는 '특허법원 민사항소심 소송절차안내'를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http://patent.scourt.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충실한 재판 진행을 위해 위 소송절차안내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쟁점정리서면은 위 소송절차안내의 'Ⅶ. 서류의 작성' 부분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항소이유의 요지"란에는 1심판결의 당부에 관한 항소인의 주장사유를 간략하게 기재하되, 그 사항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항목을 나누어 기재함.

예컨대, 1심판결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무효항변에 관하여 판단을 한 경우에는 '진보성 유무에 관하여 잘못 판단하였다'라고 추상적으로 기재하지 말고 진보성 유무 판단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잘못을 하였는지를 기재하고, 1심판결이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판단을 한 경우에는 '1심판결이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잘못 판단하였다'라고 추상적으로 기재하지 말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잘못을 하였는지를 기재함

[예시 1] 1심판결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이하 '청구항 1')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면서, 예컨대, ① 선행발명의 구성요소 1을 "A1"이라고 이해하여야 함에도 "A2"라고 잘못 이해하여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② 청구항 1의 구성요소 1을 "B1"이라고 이해하여야 함에도 "B2"라고 잘못 이해하여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③ 청구항 1의 구성요소 2와 선행발명의 구성요소 2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하다고 잘못 인정하여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④ 청구항 1의 구성요소 3과 선행발명의 구성요소 3이 동일함에도 상이하다고 잘못 인정하여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⑤ 청구항 1과 선행발명의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극복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잘못 판단하여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⑥ 선행발명이 출원 이전에 공지공용된 것임에도 이와 달리 인정하여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등

[예시 2] 1심판결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면서, 예컨대, ① 상표를 이루는 "A"부분이 식별력이 없음에도 식별력이 있다고 잘못 판단하여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② 이 사건 등록상표는 "A"부분이 요부가 아니거나 그 부분만으로 인식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잘못으로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③ 이 사건 등록상표의 호칭(또는 외관, 관념)과 선행등록상표의 호칭(또는 외관, 관념)이 유사하지 아니함에도 유사하다고 잘못 판단하여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④ 선행등록상표의 지정상품 A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K는 유사하지 아니함에도 유사하다고 잘못 판단하여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2. '쟁점'이란 당사자 사이에 사실상 또는 법률상 다툼이 있는 사항을 의미하므로, 원고 및 피고는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과 여기에 첨부되어 있는 증거자료 등을 검토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항과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항을 추출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항" 및 "쟁점"란에 기재함(쟁점이 많은 경우에는 표를 더 추가할 수 있음)

[다툼 없는 사항의 예시] ① 1심판결에서 청구항 1의 구성요소 1이 선행발명에 나타나 있거나 그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다투지 않음, ③ 1심판결에서 청구항 2~5의 한정된 구성요소가 선행발명에 나타나 있거나 그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다투지 않음

[쟁점의 예시 1] ① 선행발명의 구성요소 1을 "A1"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A2"라고 이해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청구항 1의 구성요소 1을 "B1"이라고 이해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B2"라고 이해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 청구항 1의 구성요소 2와 선행발명의 구성요소 2가 상이한지 여부, ④ 청구항 1의 구성요소 3과 선행발명의 구성요소 3의 차이점을 P라고 파악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K라고 파악하여야 하는지 여부, ⑤ 청구항 1과 선행발명의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극복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⑥ 선행발명이 출원 이전에 공지공용된 것인지 여부 등

[쟁점의 예시 2] ① 상표를 구성하는 "A"부분에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 ②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성 "A"부분이 요부이거나 그 부분만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 ③ 이 사건 등록상표의 호칭과 선등록상표의 호칭이 유사한지 여부, ④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A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K가 유사한지 여부

3. "쟁점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및 증거"란에는 쟁점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을 간략히 기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기재함. 이 항목에서는 상세한 논거를 기재할 필요는 없고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항의 개요만을 간략하게 기재하면 충분함

4. "제출 서증(전자문서) 중 주요변론 내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증거설명"란에는 서증번호, 서증의 이름, 작성일, 작성자, 요지 및 증명취지 등을 기재하되, 다만 편의상 별도의 서면(증거설명서)으로 제출할 수 있음

5. "쟁점에 대한 당사자의 추가 제출 증거"란에는 이미 제출된 증거 이외에 추가로 제출할 증거의 유무를 밝히고 만일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방법 및 증명취지를 기재함. 추가제출 증거에 관하여는 증거신청서를 별도의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적법한 증거신청이 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아울러 특허법원은 원칙적으로 첫 변론기일에 모든 증거조사를 마치는 방향으로 변론기일이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요약쟁점정리서면을 제출할 때까지는 추가제출 증거의 신청도 완료하여야 함

6. "상대방 제출 서증에 대한 인부 의견"란에는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립 인정, 진정성립을 다투는 문서에 대하여는 부인, 잘 모르는 문서에 대하여는 부지 등으로 기재함.

7. "상대방에 대한 석명사항"란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석명을 구하는 사항을 기재함

8. "소송 진행에 대한 의견"란에는 기일 진행에 관한 당사자의 의견을 기재함

※ 기타사항

1. 변론의 진행순서 및 시간: 서면 및 증거의 확인, 항소인의 항소이유 및 쟁점의 정리, 쟁점에 관한 당사자의 변론(각 20분 이내), 질의·답변, 보충변론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진행순서 및 시간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음

2. 변론 방법: 요약쟁점정리서면에 기재된 내용에 기초하여 쟁점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중심으로 변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활용하되,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재판부에서 지정한 기간까지 제출하여야 함. 도면, 도표, 대비표, 증거 등을 법정 스크린에 현출하여 놓고 변론하거나 증거설명 또는 증거탄핵 등을 하는 방식으로 변론하는 것을 권장함

3. 당사자의 주장 및 증거가 복잡하여 많은 변론시간이 소요되거나 진행순서를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재판부에 그러한 사정 및 예상 변론시간 등을 밝히면, 재판부에서 참고함 (끝)

[첨부 7]

특 허 법 원
제 0 부
변론준비명령

사 건 2018나00003
[원고 000 / 피고 000]

이 사건의 제1회 변론기일을 2018. O. O. 00:00 특허법원 000호 법정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당사자의 주장을 명확하게 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하여 원·피고에게 다음 사항에 대한 준비를 명합니다.

다 음

1. 원·피고는 2018. O. O.까지 모든 주장 및 그에 대한 주된 증거를 제출·신청하여야 합니다.
2. 증인신청, 감정신청 등 시일을 요하는 증거의 신청은 2018. O. O.까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유의사항
 - 가. 변론기일 변경 신청, 주장 및 증거의 제출·신청기간 연장신청은 기간이 도래하기 1주 전까지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나. 주장·증거의 제출·신청 기간 이후 주장을 추가·변경(예를 들어, 신규성·진보성에 관한 주장에서 주선행발명을 변경하거나 선행발명 및 그 결합관계를 추가·변경하는 등)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송완결을 지연시킨 것이 아님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사유가 소명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장·증거신청은 민사소송법 제149조에 의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 다. 변론기일에는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원고, 피고 순서로 각 20분 이내의 범위에서 구술변론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구술변론을 위한 변론자료 등은 변론기일 2 근무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변론기일에는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품이나 모형, 관련 기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마. 특허법원에서는 '특허법원 민사항소심 소송절차안내'를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http://patent.scourt.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충실한 재판 진행을 위해 위 소송절차안내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준비서면의 분량은 민사소송규칙에 따라 30쪽을 넘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준비서면은 위 소송절차안내의 'Ⅶ. 서류의 작성' 부분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증거신청은 'Ⅴ. 증거의 신청' 및 'Ⅶ. 서증의 제출' 부분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 O. O.

재판장 판사

[첨부 8]

특 허 법 원
제 0 부
사건관리 화상회의 준비명령

사 건 2018나0000
[원고 000 / 피고 000]

당사자의 주장을 명확하게 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해 아래 준비사항에 대해 준비를 명합니다.

준 비 사 항

1. 사건관리 화상회의 일정

사건관리 화상회의를 **2018. 0. 0. 00:00**에 영상통화(스카이프, skype) 방식으로 진행합니다.⁵⁾ 회의 시작 5분 전까지 스카이프(skype)에 접속하고, 영상 및 스피커, 마이크 상태 점검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2. 사건관리 화상회의의 내용

사건관리 화상회의에서는 아래의 내용 및 일정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후의 재판절차는 협의된 내용 및 일정에 따라 진행되므로, 미리 주장 및 신청할 증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법 제147조 참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상대방 대리인과 아래 사항에 대해 미리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① 변론기일 일시 및 횟수, 각 기일별 진행사항
- ② 주장 및 증거의 제출기간(종합준비서면의 제출기간, 전문가 진술서 제출기간, 준비

5) 화상회의를 위해서는 스카이프 프로그램의 설치(위 프로그램은 www.skype.com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웹 카메라(화상 카메라), 헤드셋(스피커, 마이크) 등의 장치가 필요합니다.

서면의 제출횟수 및 분량 포함)

- ③ 검증·감정이나 전문가증인 등 시일을 요하는 증거의 신청 여부 및 기간
- ④ 전문심리위원 지정 여부
- ⑤ 당사자에 의한 기술설명회의 실시 여부
- ⑥ 청구항 해석에 관한 심리를 선행하여 진행할 것인지 여부
- ⑦ 침해 여부, 특허권 등의 무효 여부, 손해배상액 산정 등 쟁점별로 진행할 것인지 여부
- ⑧ 쟁점 특허에 관한 정정심판 또는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 진행 방안
- ⑨ 무효, 권리범위확인 등 관련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 병행심리를 진행할 것인지 여부
- ⑩ 조정절차 회부 여부
- ⑪ 쟁점의 확인 및 정리

3. 유의사항

가. 원활한 소송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이 사건에서 다투는 사실관계 및 법적 쟁점을 화상회의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구범위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해당 청구항, 문언(구, 절 포함) 등을 특정하고, 그에 대하여 주장하는 해석안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건관리 화상회의 결과 별도로 발령되는 준비명령에서 주장 및 증거의 제출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을 위반하여 주장 및 증거를 제출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정당한 이유로 위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가 소명되지 아니한 주장 및 증거신청은 민사소송법 제147조 제2항, 제149조에 의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다. 특허발명 무효사유에 관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제출기간 이후에 아래 사항에 대한 주장을 추가·변경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 ①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학력, 자격, 종사분야 및 기간 등)
- ② 선행발명: 주선행발명을 추가·변경하거나 수 개의 선행발명을 결합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결합관계를 달리하는 경우

라. 특허법원에서는 '특허법원 민사항소심 소송절차안내'를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http://patent.scourt.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충실한 재판 진행을 위해 위 소송절차안내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준비서면의 분량은 민사소송규칙에 따라 30쪽을 넘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준비서면은 위 소송절차안내의 'Ⅶ. 서류의 작성' 부분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증거신청은 'Ⅴ. 증거의 신청' 및 'Ⅶ. 서증의 제출' 부분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 O. O.

재판장 판사

[첨부 9]

특 허 법 원
제 ○ 부
절차에 관한 준비명령

사 건 2018나0000
[원고 000 / 피고 000]

위 사건에 관하여 2018. ○. ○. 사건관리 화상회의에서 협의한 내용에 기초하여 주장·증거제출기간과 변론기일 등을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다 음

1. 원고(항소인) 종합준비서면의 제출기간은 **2018. ○. ○.까지**로, 피고(피항소인) 종합준비서면의 제출기간은 **2018. ○. ○.까지**로 지정합니다.
2. 전항의 종합준비서면에는 쟁점에 관한 모든 주장을 기재하고, 그에 대한 주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종합준비서면 제출 이후 주장을 추가·변경(예를 들어, 신규성·진보성에 관한 주장에 있어서 주선행발명을 변경하거나 선행발명 및 그 결합관계를 추가·변경하는 등)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송완결을 지연시킨 것이 아님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사유가 소명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주장·증거신청은 민사소송법 제149조에 의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3. 1회 변론기일을 **2018. ○. ○. 00:00** 특허법원 ○○호 법정으로 지정합니다.
가. 1회 변론기일에서 다루어질 쟁점은 ... 입니다(예: 특허 제○○호 청구범위 제1항 발

- 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 나. 변론기일에는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순서로 각 20분 이내의 범위에서 구술로 변론합니다.
- 다. 구술변론을 위한 변론자료 등은 변론기일 2근무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쟁점에 관한 전문가증인의 신청 기간은 2018. O. O.까지로 지정합니다. 전문가증인 신청서에는 전문가증인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사항 확인서[첨부 11]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전문가증인 신청이 채택되고 1회 변론기일에서 증인신문을 함께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협의 하에 1회 변론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특허법원에서는 '특허법원 민사항소심 소송절차안내'를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http://patent.scourt.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충실한 재판 진행을 위해 위 소송절차안내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준비서면의 분량은 민사소송규칙에 따라 30쪽을 넘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합준비서면은 위 소송절차안내의 'VII. 서류의 작성' 부분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전문가 증인신청은 'V. 증거의 신청' 부분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 O. O.

재판장 판사

[첨부 10]

특 허 법 원
제 ○ 부
준비명령(화상회의)

사 건 2018나0000
[원고 000 / 피고 000]

당사자의 주장을 명확하게 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해 아래 준비사항에 대해 준비를 명합니다.

준 비 사 항

1. 화상회의 일정

증거조사 일정 등 협의를 위한 화상회의를 **2018. ○. ○. 00:00**에 영상통화(스카이프, skype) 방식으로 진행합니다.⁶⁾ 회의 시작 5분 전까지 스카이프(skype)에 접속하고, 영상 및 스피커, 마이크 상태 점검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2. 원고(항소인)는 **2018. ○. ○.까지** 손해액에 관한 모든 주장 및 그에 대한 증명계획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원고(항소인)는 손해액 산정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피고(피항소인)에 대하여 석명을 구하는 사항, 손해액 산정을 위해 피고(피항소인)로부터 제출받아야 하는 서류(자료)가 있는 경우 **2018. ○. ○.까지** 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화상회의를 위해서는 스카이프 프로그램의 설치(위 프로그램은 www.skype.com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웹카메라(화상 카메라), 헤드셋(스피커, 마이크) 등의 장치가 필요합니다.

4. 피고(피항소인)는 **2018. ○.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원고(항소인)의 손해액 주장에 대한 답변
- ② 원고(항소인)가 주장하는 매출액 등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 ③ 원고(항소인)의 석명사항에 대한 답변
- ④ 원고(항소인)가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자료)의 소지 여부, 임의 제출 가능 여부, 임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그 구체적인 사유

5. 화상회의의 내용

화상회의에서는 아래의 내용 및 일정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상대방 대리인과 아래 사항에 대해 미리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① 피고(피항소인)의 임의 제출 서류(자료)의 종류 및 범위
- ② 서류(자료)제출명령의 신청 여부 및 범위
- ③ 주장 및 증거의 제출기간
- ④ 전문가증인, 감정 등 시일을 요하는 증거의 신청 여부 및 기간
- ⑤ 조정절차 회부 여부
- ⑥ 쟁점 확인 및 정리

6. 유의사항

가. 주장 및 증거의 제출 기간 이후 주장을 추가·변경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송완결을 지연시킨 것이 아님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사유가 소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주장·증거신청은 민사소송법 제149조에 의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나. 손해액에 관한 주장

- ① 원고(항소인)는 손해액산정의 근거조항을 명시하고 그 요건사실에 대한 주장에 관련되는 증거번호를 표시합니다.
- ② 피고(피항소인)은 상대방 주장사실을 다투는 경우 단순 부인이 아닌 구체적인 답

변을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부인하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예: ① 원고가 특허법 제128조 제2항에 기해 손해액 산정을 주장하는 경우 피고가 원고 주장의 양도수량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실제로 양도한 수량을 밝혀야 합니다. ② 원고가 동조 제4항에 기해 손해액 산정을 주장하는 경우 피고가 원고 주장의 이익액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실제 이익액과 그 산정의 근거가 되는 매출액, 경비, 이익률 등을 밝혀야 합니다).

다.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가 일방 당사자에게 편재되어 있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폐기하는 등 증거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특허법 제128조 제2항부터 제6항에 기해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 법원은 같은 조 제7항에 기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라. 특허법원에서는 '특허법원 민사항소심 소송절차안내'를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http://patent.scourt.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충실한 재판 진행을 위해 위 소송절차안내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준비서면의 분량은 민사소송규칙에 따라 30쪽을 넘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준비서면은 위 소송절차안내의 'VII. 서류의 작성' 부분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증거신청은 'V. 증거의 신청' 및 'VII. 서증의 제출' 부분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 O. O.

재판장 판사

[첨부 11]

전문가증인 기본사항 확인서

인적 사항	이름		생년월일	
	주소			

중립성				
1	원·피고(회사인 경우 대표이사 및 임직원, 이하 같음)와 친인척관계에 있습니까?	예	아니오	
2	원·피고와 채권·채무관계에 있습니까?	예	아니오	
3	원·피고와 업무를 같이 하거나, 계약관계, 고용관계 기타 이에 준하는 관계에 있거나, 과거에 있었습니까?	예	아니오	
4	원·피고가 관여한 소송 또는 이 사건 특허/제품 등에 관한 소송에서 증인으로 증언한 바 있습니까?	예	아니오	
5	본건 소송과 관련하여 원·피고에게 자문을 한 바 있습니까?	예	아니오	

전문성	
1	증인의 전문 분야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십시오.
2	전문 분야에 관하여, (1) 현재 및 과거의 직업(재직기간, 직위/직책, 담당업무 포함)을 밝히고, (2) 학위/자격증, 논문/보고서, 기타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십시오. ※ 아래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첨부 가능

전문가증인의 의무
전문가증인은 당사자 일방에 편향되지 않게 사실과 전문지식에 근거하여 진술하여야 합니다. 전문가증인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객관적으로 검증되고 해당 분야에서 널리 인정되는 사실/이론에 기초하여 진술하여야 하며, 자신의 주관적인 이론/해석에 기초하여 진술하여서는 안 됩니다.

위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임을 진술합니다.

일 자 20 . . .
서 명

[첨부 12]

특 허 법 원

제 0 부

변론준비명령(전문가증인)

사 건 2018나0000
[원고 000 / 피고 000]

2018. 0. 0. 00:00 변론기일에서의 전문가증인에 대한 증인신문과 관련하여 충실한 심리를 위하여 원·피고에게 다음 사항에 대한 준비를 명합니다.

다 음

1. 원고(항소인)의 전문가증인 진술서 등 제출

가. 원고(항소인)는 **2018. 0. 0.까지** 전문가증인 진술서 및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신문은 전문가증인 진술서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합니다.

나. 증인에게 주신문에서 제시하거나 인용하는 모든 자료(Family 특허, 번역문, 실물사진, 참고자료 포함)는 **2018. 0. 0.까지** 증거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2. 증인에 대한 주신문과 반대신문은 각 20분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3. 각 당사자는 주신문과 반대신문을 위한 통역인을 대동할 수 있습니다. 통역인을 대동하지 못하는 경우 **2018. 0. 0.까지** 재판부에 이를 알리고 통역인 지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국제사건에서 전문가증인이 허가된 외국어로 증언하는 경우에 당사자는 통역인을 대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전문가증인의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주장 및 증거는 **2018. 0. 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2018. O. O.

재판장 판사